

조세 · 재정 BRIEF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7. 22(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의 도입 방안

요 약

- 부가가치세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1977년에 도입된 이후 35년이 경과하였으며, 기존에 존재하던 8개의 간접세가 부가가치세로 대체되어 현재까지 그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2012년 기준 총국세 약 203.0조원 중 지방소비세가 차감된 부가가치세가 약 55.6조원, 법인세 약 45.9조원, 소득세 약 45.7조원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3대 세목 중 하나임
 - 총국세 중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3대 세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72.5%로 이 중 부가가치세 27.4%, 법인세 22.6%, 소득세 22.5%임
- 부가가치세는 세수비중이 가장 높은 중요한 세목이지만 체납 및 결손액의 증가, 부가가치세 탈루 등은 과세행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실물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확충은 한계에 도달한 실정임
 -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임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비율이 2011년 기준 11.3%로 소득세 9.0%, 법인세 2.6%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임
 - 부가가치세의 세수실적 대비 미정리체납액 비율도 2011년 기준 3.4%로 소득세 2.5%, 법인세 0.7%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
 - 외형 노출에 따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와 가공비용 계상 등 자료상 양산으로 인하여 실물거래증빙 중심 과세인프라 확충은 한계에 도달함
 - 최근 5년간 자료상 조사실적을 살펴보면, 조사건수는 2011년 기준 2,000건으로 2007년 2,280건에서 약 12%가 감소하였으나 부과세액은 2007년 1조 1,269억원에서 2011년에는 4,717억원으로 약 58% 더 크게 감소함

○ 거래징수제도상 한계로 인하여 자료상 폭탄업체 등이 부가가치세를 탈세한 사례 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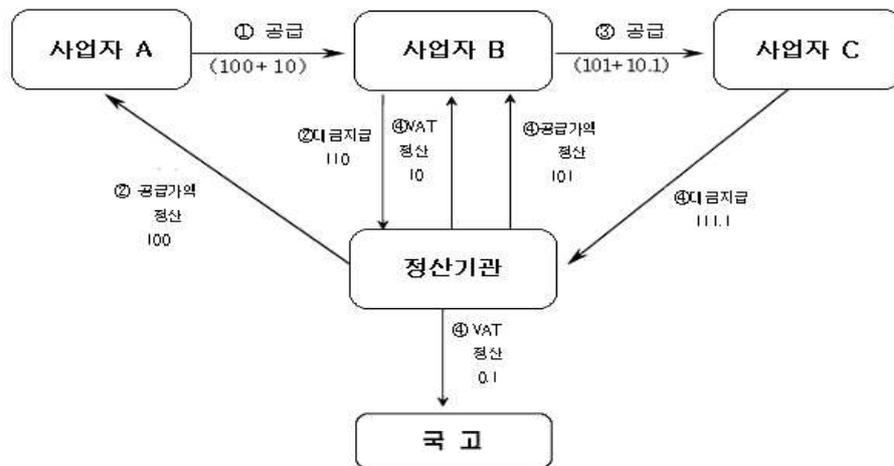
-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납세자가 본인의 세금이 아닌 담세자의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므로 납세자가 담세자로부터 징수된 세금을 탈루하지 않고 그대로 국고로 납부하는 납부의무의 이행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근간임

□ 세율인상 또는 국채발행 없이 필요한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Reverse Charge)의 도입이 유일한 대안임

○ 부가가치세수는 소득세나 법인세보다 크나, 비과세·감면 규모는 소득세나, 법인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부가가치세율 인상 없이 비과세·감면 축소, 면세범위 조정 등으로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매우 제한적임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란 사업자(공급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는 대신, 매입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제도임

[그림]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기본 개념도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의 전면적 시행시 세수증대 효과는 연간 최대(5.3조~7.1조원)+ a가 될 것으로 기대되나, B2C와 B2B 거래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시행할 경우 기대되는 세수효과는 적용범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임

○ 전면적 시행시 연간 세수증대 효과

- 결손 및 미정리채납액 방지: 최대 3.4조원
- 폭탄업체(MTIC Fraud) 방지: 1.9조~3.7조원
- 법인세·소득세수 증가효과,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 등: a

부가가치세제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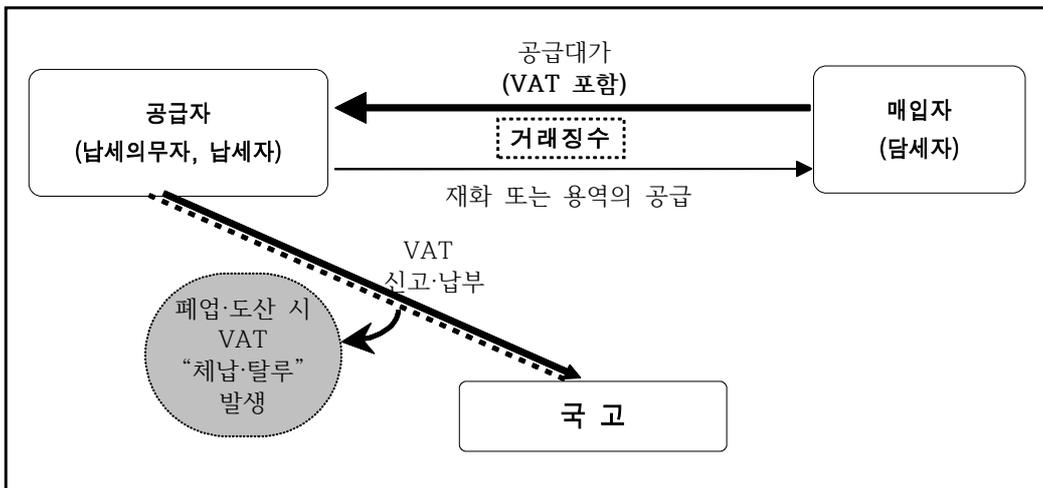
1. 간접세

-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 또는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조세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인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임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할 때 지급하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주체는 소비자임

간접세: 납세의무자 ≠ 담세자	직접세: 납세의무자 = 담세자
------------------	------------------

- 부가가치세 간접세의 거래징수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 이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 즉,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징수시 사업자는 담세자가 부담한 세금을 담세자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데 지나지 않음

[그림 1] 부가가치세(간접세) 거래징수 개념도



2. 전단계세액공제법 및 다단계거래세

-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가산법¹⁾과 공제법(전단계거래액공제법²⁾ 및 전단계세액공제법)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는 「전단계세액공제방법」을 채택하고 있음
 - 「전단계세액공제법」은 매출세액에서 거래 전단계에서 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Tax Exclusive)하는 방식으로, 세액계산 절차를 거치면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결과가 간접적으로 유도되는 특징이 있음
- 또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모든 거래단계마다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다단계거래세」로 각 거래단계별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 즉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함

3. 비거주자 등에 대한 대리납부제도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제도임
 -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아 거래사실의 포착이 어렵고, 비거주자 등의 용역공급자들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내용역 거래와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도입됨

1) 일정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 지대, 이자, 이윤 등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기본요소를 합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부가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생산요소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형 부가가치세에 적용될 수 있음

2)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거래액에 세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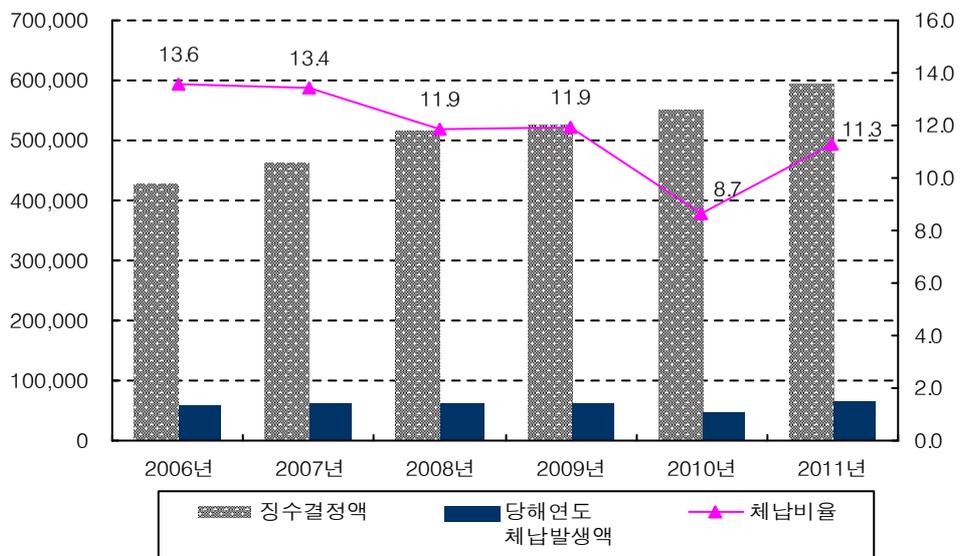
II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문제점

1. 체납비율 과다

-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임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비율이 2011년 기준 11.3%로 소득세 9.0%, 법인세 2.6%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으로 부가가치세 체납비율 추이는 2006년 13.6%에서 2011년에는 11.3%로 2.3%p 감소함

[그림 2] 부가가치세 체납비율 추이

(단위: 억원,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체납정리실적 미흡

- 부가가치세는 매출자가 매입자를 대신하여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는 데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수실적 대비 미정리체납액 비율은 2011년 기준으로 3.4%임
- 특히, 직접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와 비교 시 미정리체납액 비율이 2011년 기준

6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의 도입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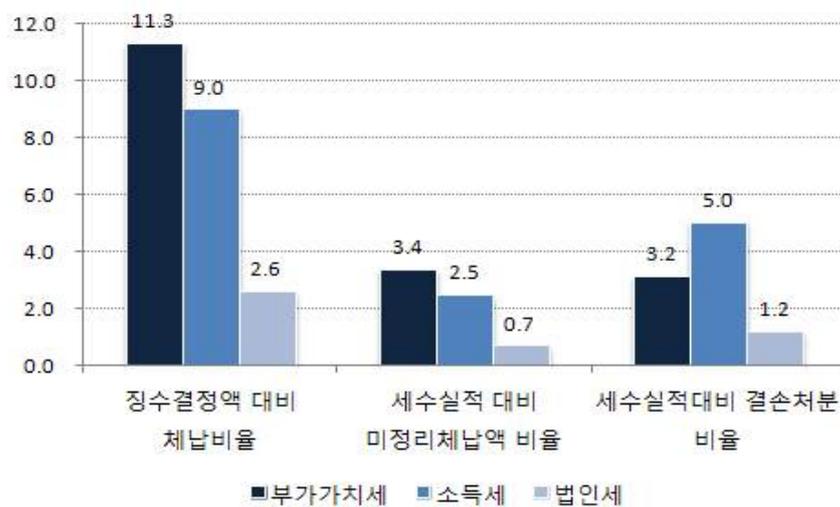
3.4%로 주요 세목인 소득세 2.5%, 법인세 0.7%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또한, 2011년 주요 세목의 결손처분 비율은 부가가치세 3.2%, 소득세 5.0%, 법인세 1.2%로 나타남

- 한편, 우리나라의 세수실적 대비 국세결손 처분비율은 2009년 기준 4.6%로 EU 주요국인 영국 0.9%, 독일 0.6%, 프랑스 1.2%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수준임

[그림 3] 주요 세목의 체납현황(2011년 기준)

(단위: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1

3. 폭탄업체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탈세

□ 주요 부가가치세 탈루유형은 구리, 철, 알루미늄 등의 재활용 폐자원 등 시장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VAT 탈세, 무자료 주류, 면세유를 활용한 전문 조세포탈 범죄형 VAT 포탈,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에 대한 무자료 공급 등 부가가치세의 허점을 이용한 VAT 탈세, 부당 매입세액 및 세금계산서 자료상 부당 매입세액 환급 등이 있음

□ 외형 노출에 따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와 가공비용 계상 등 자료상 양산으로 인하여 실물거래증빙 중심 과세인프라 확충은 한계에 도달함

- 최근 5년간 자료상 조사실적을 살펴보면, 조사건수는 2007년 2,280건에서 약

12%가 감소한 2011년 기준으로 2,000건으로 나타남

- 반면, 부과세액은 2007년 1조 1,269억원에서 2011년에는 4,717억원으로 약 58%가 감소하였으며, 건당 부과세액도 2007년 4.9억원에서 2011년 2.4억원으로 약 52%가 감소함

<표 1> 최근 5년간 자료상 조사실적

(단위: 건,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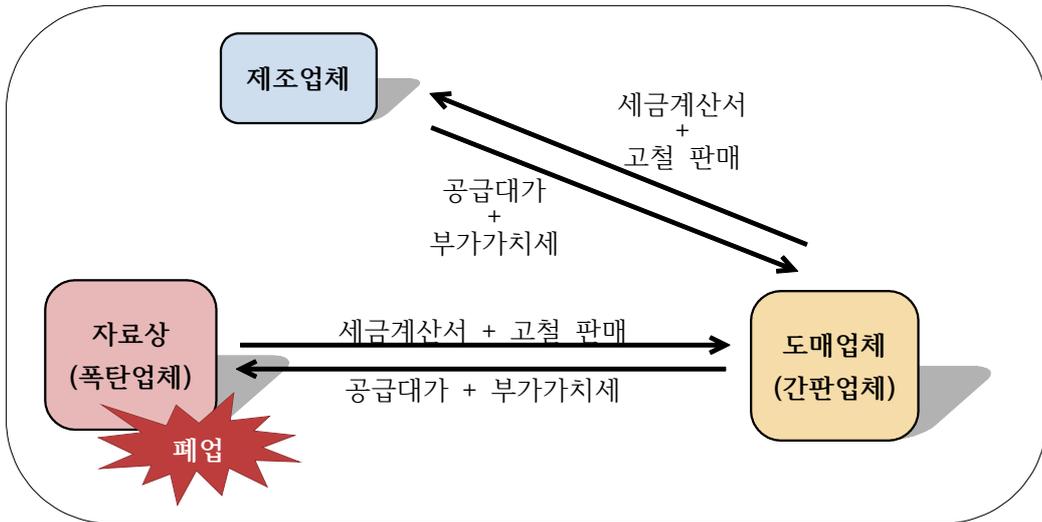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조사건수	2,280	2,063	2,041	2,251	2,000
고발인원	1,702	1,492	1,474	1,571	1,410
부과세액	11,269	10,490	4,649	5,906	4,717
건당 부과세액	4.9	5.1	2.3	2.6	2.4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 또한 전단계세액공제법으로 인한 거래징수제도상 한계로 인하여 자료상 폭탄업체 등이 부가가치세를 탈세한 사례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국세청은 금도매업자들이 면세금지금제도를 악용한 부가가치세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3~2005년 상반기까지 총 48건을 고발하고 8,422억 원을 추징함
 - 최근 검찰과 국세청의 합동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조원 상당의 가짜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 22개 업체가 적발됨
 - 이러한 자료상은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철스크랩 등을 공급한 것처럼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음

부가가치세 탈루 사례

CASE 1 철스크랩을 판매하는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현행 부가가치세제를 악용하여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부가가치세 포탈



- ① 제조업체에 고철을 납품하기 위해 정상영업이 가능한 도매업체(간판업체)와 간판업체에 세금관련 문제가 생기 않도록 매입자료를 공급하는 자료상(폭탄업체)을 설립
- ② 자료상은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에 고철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받지 않음
- ③ 해당 고철을 도매업체에 시중가로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정상 발행
- ④ 도매업체는 제조업체에 해당 고철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정상 발행
- ⑤ 제조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고철대금을 도매업체에 송금하고, 도매업체는 이를 수집상에게 송금
- ⑥ 대금을 송금받은 자료상은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뒤 과세당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탈루

III VAT Gap

1. 개념 및 측정방법

□ VAT Gap은 이론적 부가가치세 징수총액(VAT Theoretical Tax Liability)과 실제 징수금액(Actual VAT Receipts)과의 차이로 「VAT Gap」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음

- ① 조세범칙(Criminal Attack):
 - 행방불명 무역업자 사기(MTIC Fraud)
 - VAT 부정환급
- ② 채납(Debt)
- ③ 탈세(Evasion), 지하경제(Hidden Economy), 조세회피(Avoidance), 오류(Error), 법해석 차이(Legal Interpretation) 등

<표 2> 「VAT Gap」 구성요소

구성요소	주요 내용
조세범칙 (Criminal Attack)	- 행방불명 무역업자 사기(Missing Trader Intra-Community: MTIC Fraud) -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사기(VAT Repayment Fraud)
채납(Debt)	- 신고하였으나 납부되지 않은 금액
기타 (Other Losses)	- 탈세(Evasion) - 지하경제(Hidden Economy) - 조세회피(Avoidance) - 법해석(Legal Interpretation) 차이 - 오류(Error) 등

자료: HMRC, Measuring Tax Gaps 2012, 2012. 10.

□ 영국 국세청(HMRC)은 국민계정(National Account Data)을 이용하는 Top-Down 방법으로 「VAT Gap」을 추정하고, Bottom-Up 방법을 이용하여 「행방불명 무역업자 사기금액(MTIC Fraud)」을 추정함

- Top-Down 방법: 국민계정을 이용하여 이론적 부가가치세 징수총액(VAT Theoretical Tax Liability: VTTL)을 도출한 후, 실제 징수된 부가가치세 수입과 비교하여 「VAT Gap」을 구함
 - 이론적 부가가치세 징수총액(VTTL)이란 만약 부가가치세 징수시 발생하는 관련 사기행위(Fraud), 조세회피(Avoidance) 혹은 채납(debt) 및 이외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발생하는 총징수액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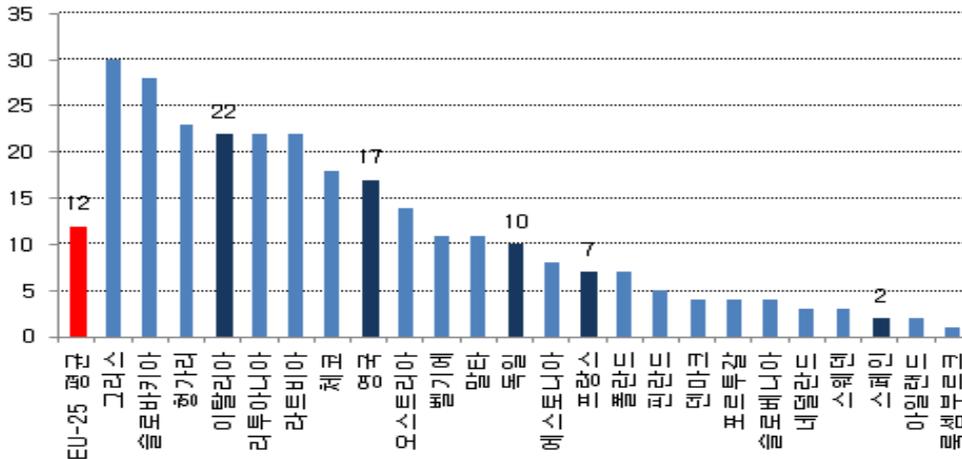
2. EU 25개국의 VAT Gap

- EC³⁾가 의뢰하여 EU회원국의 「VAT Gap」을 추정한 Reckon LLP(200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2006년 EU회원국의 「VAT Gap 비율」은 1 ~ 30% 범위에 분포되어 있으며, EU 25개국 평균 「VAT Gap 비율」은 12%로 추정됨
- EU 25개국 평균 12%보다 높은 국가는 그리스, 헝가리, 영국, 오스트리아 등 총 9개국으로 나타남
 - 「VAT Gap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30%인 그리스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슬로바키아와 헝가리가 각각 28%, 23%임
 - 「VAT Gap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1%인 룩셈부르크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아일랜드와 스페인이 2%의 순임
- 주요 국가의 「VAT Gap 비율」은 이탈리아 22%, 영국 17%, 독일 10%, 프랑스 7%, 스페인 2%임

3) 유럽연합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00~2006년을 대상으로 25개의 유럽연합 국가들의 VAT Gap에 대한 연구를 경제컨설팅기관(economics consultancy)인 Reckon LLP에 의뢰하여 VAT Gap을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 “Study to quantify and analyse the VAT gap in the EU-25 Member States”를 발표함

[그림 4] EU 25개국의 「VAT Gap 비율」 비교(2006)

(단위: %)



자료: Reckon LLP(2009), Study to quantify and analyse the VAT gap in the EU-25 Member States, 2009, p. 9

3. 우리나라의 VAT Gap

□ 우리나라의 2010년 「VAT Gap 비율」인 약 14.3%를 적용한 2011년의 「VAT Gap」은 약 9.1조원이며 결손 및 미정리체납액은 약 3.4조원, 또한, 폭탄업체 등의 부가가치세 탈루나 각종 조세회피 등으로 인한 기타 세수손실은 약 5.7조원임

<표 3> 2011년 「VAT Gap」 (생산자가격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2011년
조정된 이론적 부가가치세 징수액 (A)1)	637,240
(-) 실제 부가가치세 징수액	(-)546,388
VAT Gap (B)	90,852
▪ 결손처분 및 미정리체납액	34,179
▪ 부정환급, 폭탄업체 등의 부가가치세 탈루 등 조세회피	56,673
VAT Gap 비율 (B/A)	14.3

주: 1) 추가조정으로 가산조정(접대비, 비영업용소형승용차 매입세액불공제분), 차감조정(의제 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을 고려한 금액임

1. 2010년 산업연관표는 현재 생산자가격평가표만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자가격으로 2010년 VAT Gap 비율을 추정함

2. VAT Gap 비율(B/A)은 2010년 기준 14.3%를 이용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징수실적은 2010. 1. 1일부터 신설된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5%) 포함 금액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0

IV

해외 운영사례

1. EU회원국의 VAT Reverse Charge 추진동향

- 2006년 5월: 재정사기(Fiscal Fraud)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 개시⁴⁾
 - EU위원회(Commission)는 내부시장(Internal Market)에서 재정사기(Fiscal Fraud)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대처방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EU 수준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함

- 2007년 12월: 조세사기(Tax Fraud) 대응 필요성 수용⁵⁾
 - EU이사회(Council)는 2007년 12월 조세사기(Tax Fraud)에 대응할 방안 및 유해조세경쟁 등에 대하여 다루어야 한다는 EU위원회(Commission)의 결론을 수용함

- 2008년 2월: 조세사기(Tax Fraud) 대응방안 제시⁶⁾
 - 2008년 2월 EU 위원회에서는 VAT Fraud에 대응하기 위하여 VAT 시스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두 가지 방안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바, 그 중 하나가 「전면적인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General Reverse Charge System)」 도입임
 - 전면적인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시스템(General Reverse Charge System)
 - 역내거래 과세제도(System of Taxation of Intra-Community Transactions)

- 2008년 12월: 전면적인 매입자납부제도(General Reverse Charge System)에 대한 합의 미도달
 - 그러나 이후의 EU 재무장관회의(ECOFIN Council)에서 「전면적인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General Reverse Charge System)」 등과 관련하여 상정된 안건

4) COM(2008) 807, 2008. 12. 1, p. 3.

5) Council Conclusions 4 December 2007, 15698/07 (Presse 270)

6) COM(2008) 807, 2008. 12. 1, p. 3.

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게 됨)

- 2008년 12월 EU위원회는 만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매입자납부제도 제도 도입과 역내과세제도에 대하여 회원국이 정치적 합의점에 이르지 못할 경우, 조세사기(Tax Fraud)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위 '전통적인(conventional)' 수단에 노력을 집중하기로 결정함

□ 2009년 9월: 부분 매입자납부제도(Targeted Reverse Charge System) 제안⁸⁾

- 일부 회원국들은 부가가치세 지침(VAT Directive)⁹⁾ 제395조에 의해 이사회에 부여된 수정권한에 따라서 VAT 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부문이나 특정 재화에 대하여는 「부분 매입자납부제도(Targeted Reverse Charge System)」를 통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요청함¹⁰⁾
 - 2008년 12월 이후로 사기(Fraud)가 내부시장의 올바른 기능을 위한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EU 회원국의 세수실적에 위협을 가하게 됨
- 이에 따라 2009년 9월 EC는 VAT 사기가 발생하기 쉬운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부분 매입자납부제도(The VAT Targeted Reverse Charge Mechanism)」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함
 - 온실가스 배출 허용(Greenhouse Emission Allowances)
 - 휴대폰(Mobile Telephones), 집적회로장치(Integrated Circuit Devices)
 - 향수(Perfume), 귀금속(Precious Metals)
 - 기타 회전목마 사기(Carousel Fraud)에 적합한 특정 재화 등

□ 2012년 6월: 부분 매입자납부제도(Targeted Reverse Charge System) 적용 촉구¹¹⁾

- EC는 Action Plan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제안된 분야 중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가 아직 적용되지 않고 탈세위험이 높은 거래에 대하여는 「회전목마 사기(Carousel Fraud)」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를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하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함
 - 온실가스 배출 허용(Greenhouse Emission Allowances)은 2010년 이미 VAT

7) COM(2008) 807, 2008. 12. .1, p. 3

8) COM(2012) 722, 2012. 12. 6, pp. 4~5

9) Directive는 EU회원국 간에 동일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Regulation과 달리 회원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자국법의 교체가 가능함

10) COM(2009) 511, 2011. 9. 29, p.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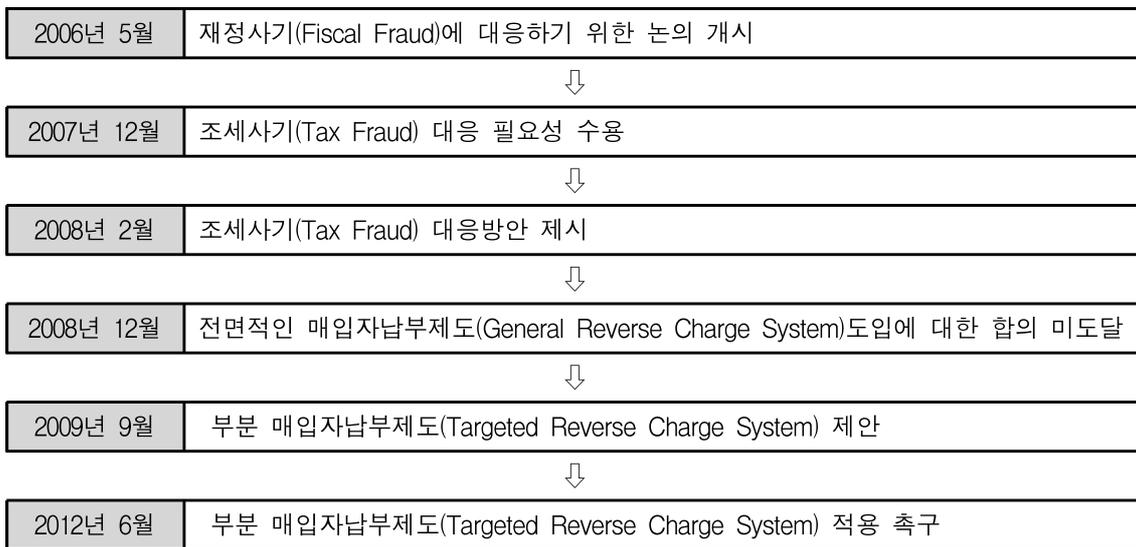
11) COM(2012) 722, 2012. 12. .6, pp. 5~6

14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의 도입 방안

매입자납부제도 적용

- VAT 매입자납부제도가 아직 적용되지 않고 탈세위험이 높은 부문의 거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VAT 지침서를 수정할 경우 회원국의 조세사기 대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함
- 탈세위험이 높은 분야: 역외거래 또는 건설 또는 폐기물 등¹²⁾

[그림 5] EU회원국의 VAT Reverse Charge 추진동향



2. EU회원국의 행방불명 무역업자 사기(MTIC Fraud)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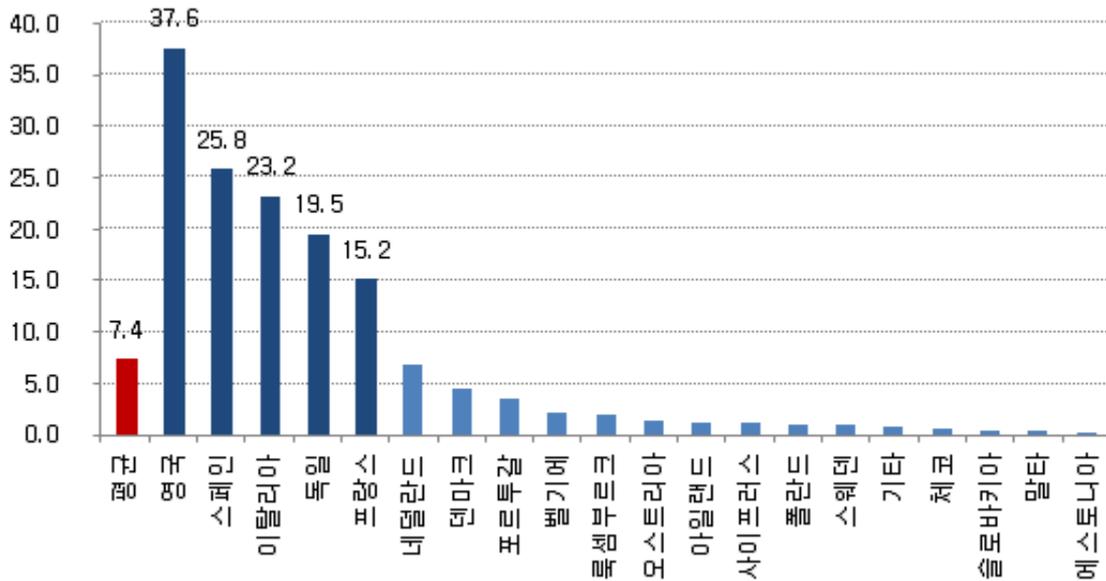
- EU회원국의 행방불명 무역업자 사기(Missing Trader Intra-Community Fraud, MTIC Fraud)¹³⁾ 규모는 2005~2006년 최대 148억유로(한화 약 20.7조원)임
 - 영국이 2005~2006년 약 37.6억유로(한화 약 5.2조원)로 EU국가 중 2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스페인: 25.8억유로(한화 3.6조원), 이탈리아 23.2억유로(한화 약 3.3조원)의 순임

12) COUNCIL DIRECTIVE 2010/23/EU of 16 March 2010

13) 「회전목마 사기(Carousel Fraud)」로 알려져 있으며, 특정 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거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후 다른 무역업자에게 해당 물품을 공급.거래징수를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임

[그림 6] EU 주요국의 「행방불명 무역업자 사기(MTIC Fraud)」 추정치(2005-06)

(단위: 억유로)



자료: Reckon LLP(2009), Study to quantify and analyse the VAT gap in the EU-25 Member States, pp. 104~106;
 European Union Committee, Stopping the Carousel: Missing Trader Fraud in the EU, 2007, p. 131.

3. EU회원국의 도입 현황

- 「VAT Gap 비율」과 「행방불명 무역업자 사기(MTIC Fraud)」 추정치가 높게 나타난 영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reverse charge system)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남
 - 「VAT Gap 비율」을 살펴보면, 이탈리아 22%, 영국 17%, 독일 10%, 프랑스 7%, 스페인 2%임
 - 「행방불명 무역업자 사기(MTIC Fraud)」에 대한 추정치는 영국 37.6억유로, 스페인 25.8억유로, 이탈리아 23.2억유로, 독일 19.5억유로, 프랑스 15.2억유로의 순임

16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의 도입 방안

<표 4> EU 주요국 중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현황(2012년)

(단위: %, 억유로)

	VAT Gap 비율 (2006년)	행방불명 무역업자 사기 추정치 (2005~06년)	도입 여부
이탈리아	22	23.2	○
영국	17	37.6	○
독일	10	19.5	○
프랑스	7	15.2	○
스페인	2	25.8	○
평균	12	7.4	

자료: Reckon LLP, Study to quantify and analyse the VAT gap in the EU-25 Member States, 2009, p. 9
 European Union Committee, Stopping the Carousel: Missing Trader Fraud in the EU, 2007, p. 131.
 Centre for Regional Development of the CR, Procedures for Value Added Tax for Services Connected with Immovable Property in Particular EU Member States (27), 2012, pp. 6~7

- EU국가에서는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를 지는 국내대리납부(Domestic Reverse Charge) 규정이 있음
 - EU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적용대상 품목은 투자금(investment)이 있으며, 건설공사, 담보·압류·법원결정으로 인한 재화의 이전, 중고자재·폐기물·고철, 부동산, 목재, 의류 등의 공급에 대해 매입자납부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함

<표 5> EU 주요국의 국내대리납부제도 적용대상 품목

국가	투자금	건설공사	담보·압류 ·법원명령	중고자재· 폐기물·고철	부동산	기타
영국						휴대폰·컴퓨터칩
독일		○	○		○	
오스트리아		○	○	○		
벨기에	○					
스웨덴	○	○	○			
스페인	○					
루마니아		○	○	○	○	원목
네덜란드	○	○			○	조선, 의류
라트비아	○					목재
이탈리아				○		
핀란드	○					

자료: 김재진,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를 통한 거래징수 효율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10. 11

4. 영국 사례

- 영국은 2007년 6월 1일 이후 영국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5천파운드 이상 특정재화(휴대폰 및 컴퓨터칩 공급)의 B2B거래에 대해서는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짐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Reverse Charge)하에서 공급자가 아닌 매입자는 특정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영국 국세청(HMRC)에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요건 1] 영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특정 재화의 공급에 한하므로 다음의 경우에는 동 제도의 영향이 미치지 아니함
 - 매입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 다른 EU회원국으로의 재화의 이동
 - EU회원국 이외의 국가로의 수출
 - [요건 2] 부가가치세 포함 전 가격 기준으로 5천파운드 이상이어야 함
 - 동 금액은 송장(invoice)을 기초로 하며, 송장에 기재된 모든 적용대상 재화의 총가격이 5천파운드 이상일 경우 적용됨
 - 다만, 적용대상 이외의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이 적용대상이 포함된 송장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대상 이외의 재화 및 서비스는 동 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함
 - [요건 3]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업 목적으로 당해 재화를 구입하는 것이어야 함
 - 따라서 동 제도가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매입자의 부가가치세 등록번호를 확보하고, 그 번호가 유효하고 조건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최근 『The Mirrlees Review』¹⁴⁾에서는 부가가치세 관련 무역업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제시함
 - 매입자납부제도(Reverse Charge) 도입
 - 수출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영세율제도 폐지 또는 축소

14)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James Mirrlees를 편집 책임자로 하여 전 세계의 석학들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영국의 조세제도가 21세기 개방경제 환경에 부합하기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지를 제시한 종합보고서임

V

국내 운영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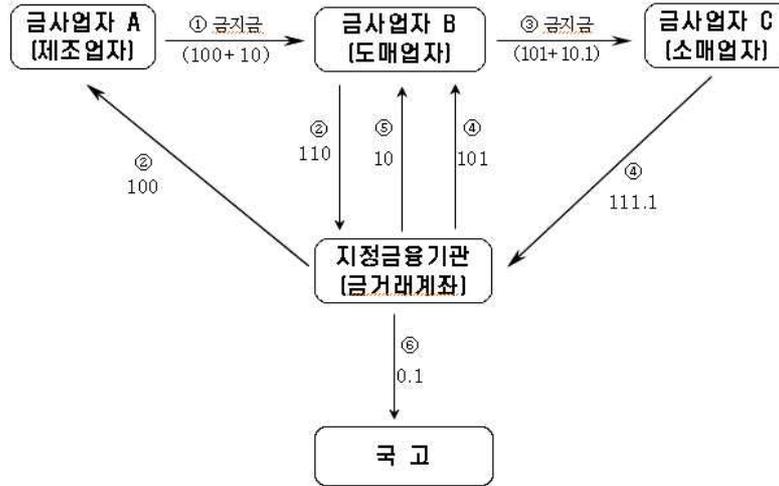
1.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제도

- 금지금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포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금지금 거래의 투명화를 위하여 금지금에 대하여는 매출자납부방식에서 매입자납부방식으로 전환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함¹⁵⁾
 - 이전에는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토록 하는 제도를 악용, 무자료로 매입한 금지금을 과세로 매출하여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은 후 이를 정부에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식의 부가가치세 포탈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 2009년 7월 1일부터는 탈세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 고금을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에 추가하여 시행함

- 금사업자 간의 금지금 및 금제품 거래시에는,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고, 매입자가 직접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임
 - 주요 내용
 - 적용대상: 금사업자 간에 금지금 및 금제품 거래시
 - 금거래계좌 개설 : 금사업자는 지정금융기관에 금거래계좌 개설
 - 금거래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및 부가가치세액 입금
 - 금거래계좌를 통한 대금 지급 및 부가가치세 처리
 - 금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불이익 :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

1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제도 사례



- ① 금사업자 A가 금사업자 B에게 100억원의 금지금을 매출
- ② 금사업자 B는 금지금 가액 100억원 및 부가가치세액 10억원을 금거래계좌에 입금(결제) → 지정금융기관은 금지금 가액 100억원을 A에게 지급
- ③ B가 금사업자 C에게 금지금을 101억원에 매출
- ④ C는 매입세액(B의 매출세액) 10.1억원을 포함한 111.1억원을 금거래계좌에 입금(결제) → 지정금융기관은 금지금가액 101억원(=111.1억-10.1억)을 B에게 지급
- ⑤ C가 매입세액(B의 매출세액)을 입금하는 즉시, 지정금융기관은 B에 대하여 매출세액(10.1억원)의 한도 내에서 매입세액(10억원)을 환급
- ⑥ 신고기간 도래 시, 지정금융기관은 실시간 환급 후의 잔액(0.1억원)을 국고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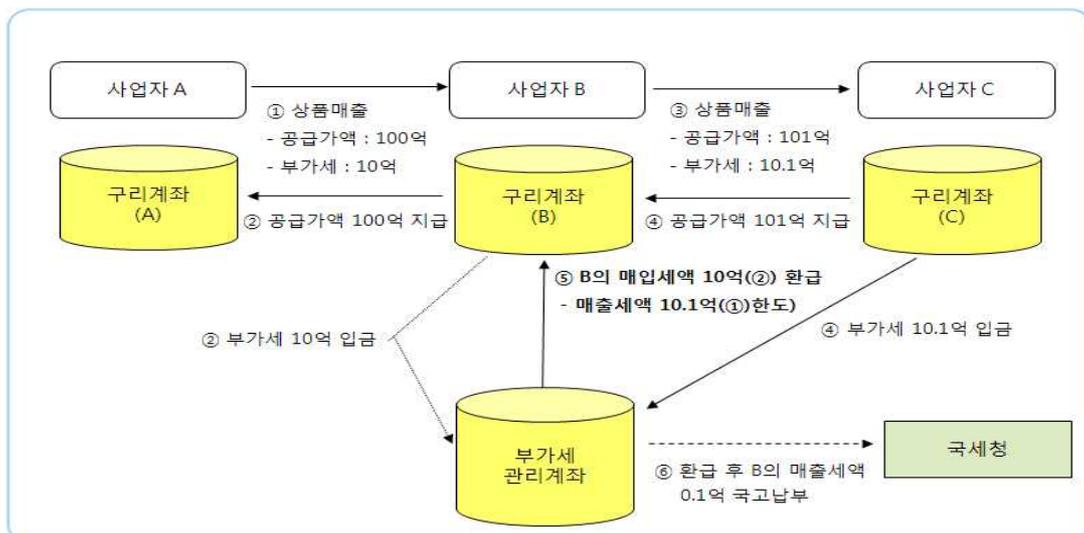
<표>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제도 사례

순번	매입세액	매출세액	실시간 환급세액	국고입금예정세액
1	100	-	-	-
2	-	110	100	10
3	100	-	10	-10
4	-	111.1	101	10
5	-	-	10	10
분기결산	221	221.1	221	0.1

2. 구리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 2014년 1월부터 사업자 간에 구리 스크랩 등을 거래하는 경우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매입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임
 - 최근 구리 스크랩 시장에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일명 ‘폭탄사업자’가 광범위하게 나타남
 - 시장 가격이 왜곡되고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등 큰 폐해가 발생
 - 구리 스크랩은 다른 폐자원에 비해 고가이며 지속적인 수요가 있어 대규모 탈루행위가 용이하여 자료상 행위가 시장 전반에 발생하는 등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였음
 - 구리 스크랩시장의 정확한 탈루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기획재정부는 연간 약 45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현행 매출자납부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탈세 방지
 - 구리 스크랩 등 관련 거래의 투명화를 통한 세원 양성화
 - 궁극적으로 자원재활용 산업발전 기여

[그림 7] 구리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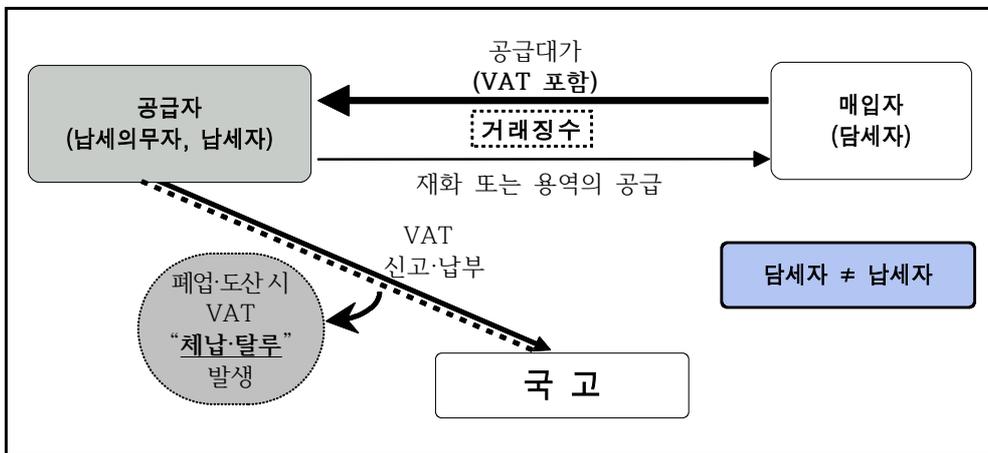


주: 국세청 보도자료, 「내년부터 구리 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2013. 12. 22

VI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도입방안

- 세율인상 또는 국채발행 없이 필요재원을 마련하기 방안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Reverse Charge)의 도입이 유일한 대안임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란 사업자(공급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는 대신, 매입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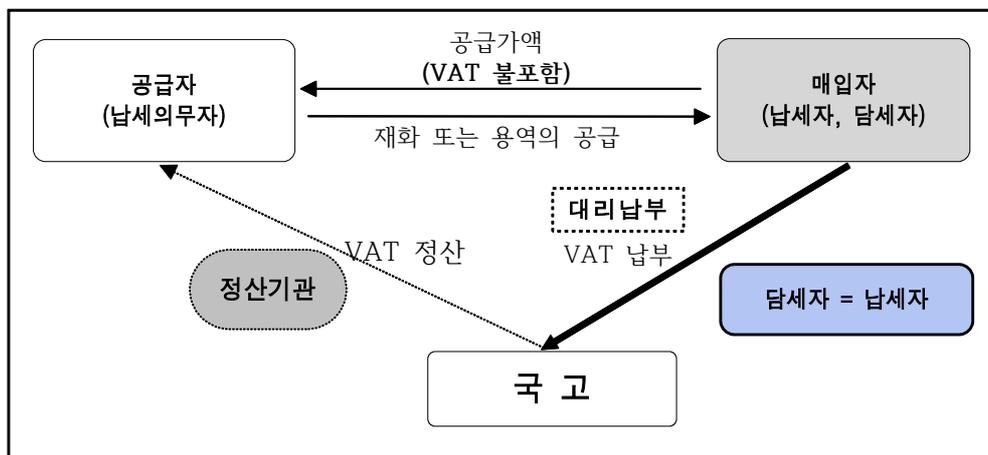
[부가가치세(간접세) 거래징수 개념도]



※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공급자인 납세자가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탈루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기본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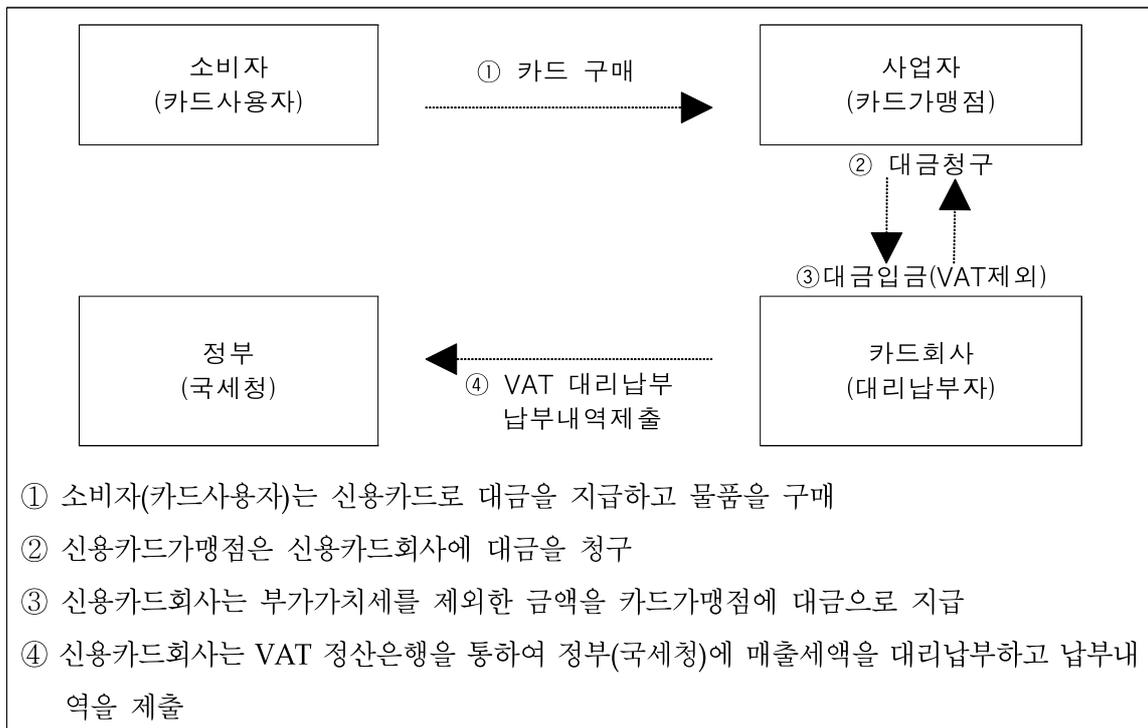


1. 사업자와 최종소비자 간 거래(B2C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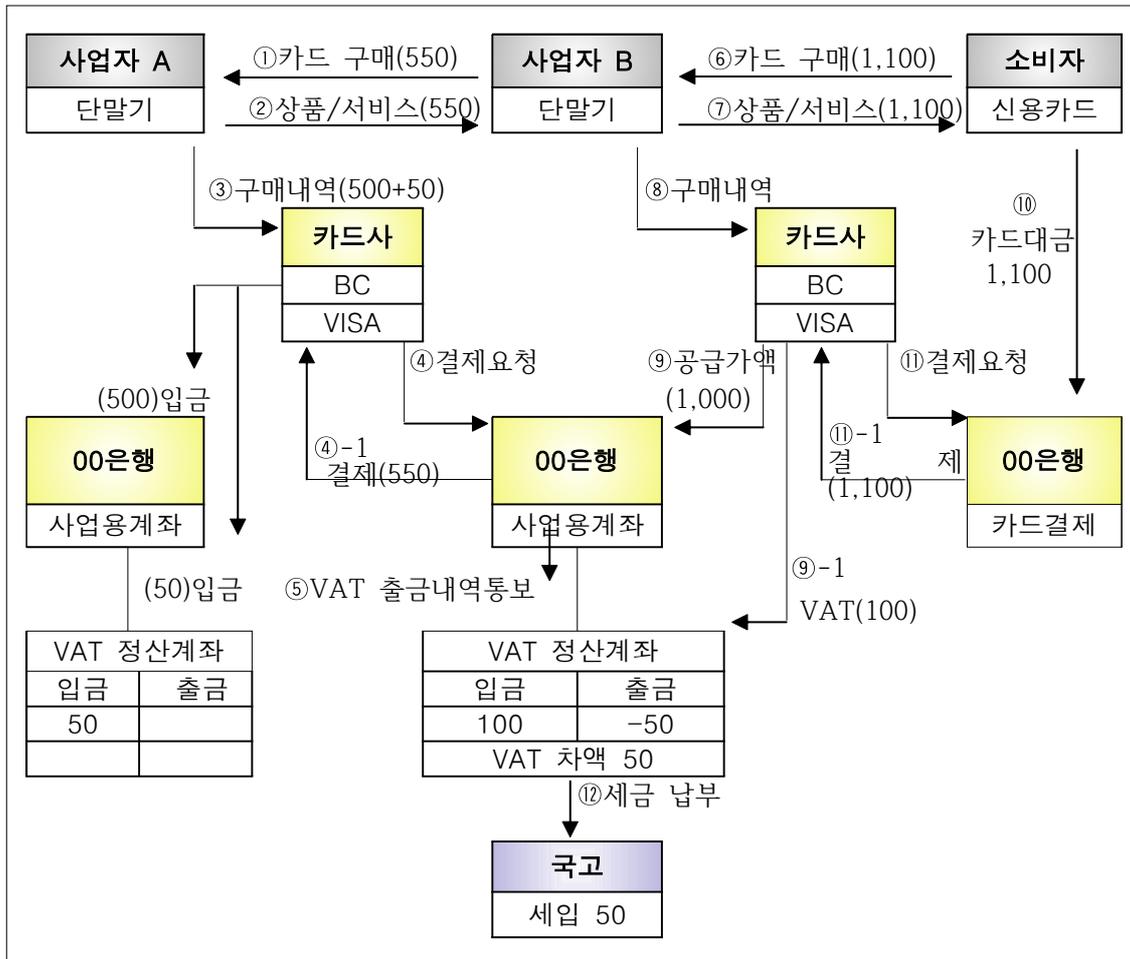
- 신용카드사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자로 지정함
 - 결제단계: 소비자 → 전자금융업자(신용카드회사) → 사업자 → 국가
 - 전자금융업자인 신용카드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대리납부자로 지정하여 사업자와 최종소비자 거래시 부가가치세 징세의 효율성 제고

- 적용대상
 - 모든 신용카드 거래에 대하여 일괄 적용
 -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특례적용 대상자를 업종별·사업자별로 구분하여 지정
 - 국세청의 신용카드 가맹점 권장대상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특례적용 대상으로 지정

[그림 8] 신용카드 결제분 거래징수 개념도



[그림 9] VAT 신용카드 결제분 거래징수 구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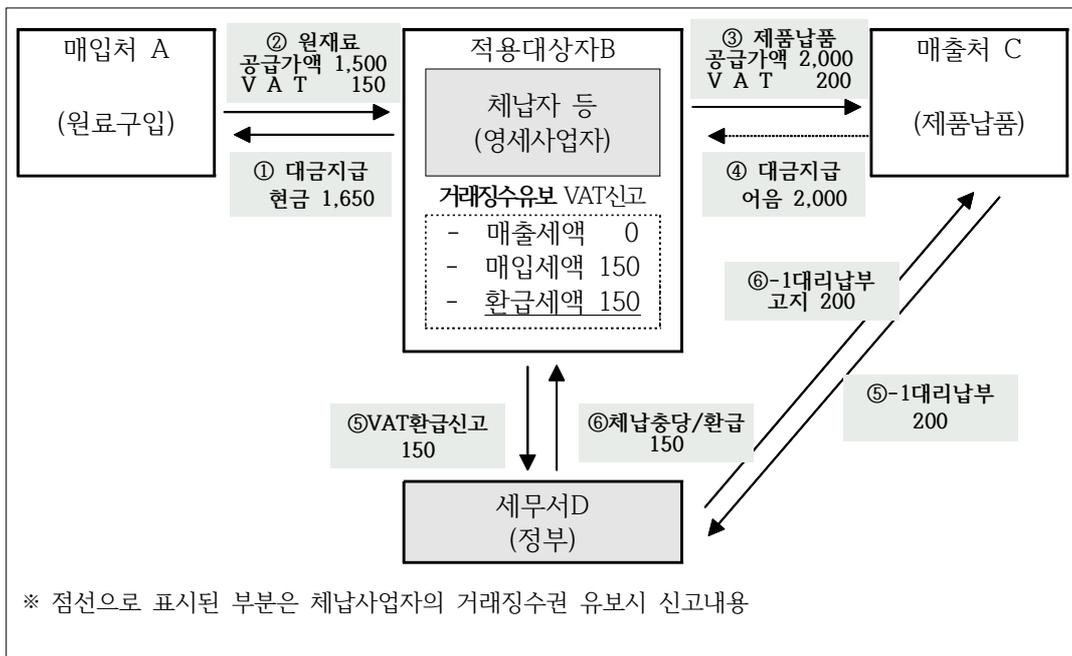


- ① 사업자 B는 사업자 A로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550원의 상품/서비스를 구매
- ② 사업자 A는 사업자 B에게 상품/서비스를 공급
- ③ 사업자 A의 단말기를 통하여 구매내역이 신용카드사에 전송
- ④ 신용카드사는 사업자 B의 사업용계좌 개설은행에 결제를 요청
- ④-1. 사업자 B의 사업용계좌 개설은행은 신용카드사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 550원을 결제
- ⑤ 사업자 B의 사업용계좌 개설은행은 VAT 정산계좌에 매입세액 50원의 출금내역을 통보
- ⑥ 소비자는 사업자 B로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0원의 상품/서비스를 구매

2. 사업자와 사업자 간 거래(B2B 거래)

- 「사업자-사업자」 간 거래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제도를 납세자의 세무이행능력과 납세자간 역학관계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고의체납자 등 불성실사업자, 부가가치세 전가가 곤란한 한계기업, 생계형 영세사업자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특례제도를 운영

[그림 10] B2B 거래시 기본 개념도



- ①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특례적용 대상자인 사업자 B가 매입처 A로부터 공급대가 1,650원(VAT 150원)의 원재료 매입
- ② 사업자 B는 구입대가로 1,650원을 현금 지급(결제)
- ③ 사업자 B가 매출처 C에 공급대가 2,200원(VAT 200원)의 제품을 매출
- ④ 매출처 C는 제품납품 대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2,000원을 사업자 B에게 어음으로 지급
- ⑤ 사업자 B는 매입세액 150원을 세무서 D에 환급신고
- ⑤-1. 매출처 C는 사업자 B의 매출세액 200원을 세무서 D에 대리하여 납부
- ⑥ 세무서 D는 사업자 B의 매입세액 150원을 체납세액에 충당하거나 환급
- ⑥-1. 세무서 D는 매출처 C에 200원의 대리납부를 고지

VII 기대효과

1. 세수증대 효과

- 현재 공급자납부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를 매입자납부제도로 전면적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해외사례에서 보듯이 부분적인 시행을 통해서도 세수탈루를 방지함으로써 상당한 세수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의 전면적 시행시 세수증대 효과는 연간 최대(5.3조~7.1조원)+a가 될 것으로 기대되나,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B2C와 B2B 거래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시행할 경우 기대되는 세수효과는 적용범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임
 - 전면적 시행시 연간 세수증대 효과
 - 결손 및 미정리채납액 방지: 최대 3.4조원
 - 폭탄업체(MTIC Fraud) 방지: 1.9조~3.7조원
 - 법인세·소득세수 증가효과, 지하경제양성화 효과 등: a

2. 징세비용 절감

- 공급자와 수요자 간 역학관계 및 납부의무의 이행가능성을 고려한 매입자납부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관련한 비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탈세를 방지하여 조세수입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함
 - 2011년 기준 해당연도 중 자료상 조사인원 2,000명 중 70.5%인 1,410명을 고발함
 - 전단계세액공제법이 가진 거래징수의 제도상 한계로 인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가공비용 계상 등에 대한 자료상 조사는 2010년 기준 전체 조사건수의 12%를 차지하고 있음

26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의 도입 방안

- 또한, 2011년 4,592명을 세무조사하여 당초 과세표준보다 약 11조 4,200억원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 약 5,800억원을 추가 징수한 바 있음

3. 부당환급 방지

- 매입자납부제도의 도입은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무신고·무납부자와의 거래 등으로 인한 부당환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세청은 2006년 1~10월 동안 13,132명에 대하여 서면분석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1,991억원의 부당환급을 추징한 바 있음
 - 즉, 자영사업자가 세부담을 축소할 목적으로 위장·가공매입 등을 통해 부당환급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참고문헌

곽태원·현진권, 『조세론』, 법문사, 2007.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국세청 보도자료, 「내년부터 구리 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2013. 12. 22

김재진,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를 통한 거래징수 효율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10. 11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1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 60년사』, I, 2010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0

Centre for Regional Development of the CR, *Procedures for Value Added Tax for Services Connected with Immovable Property in Particular EU Member States (27)*, 2012. 09.

EC, COM (2004) 260,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on the use of administrative cooperation arrangements in the fight against VAT fraud*, 2004.

_____, COM (2006) 254,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Concerning the Need to Develop A Co-Ordinated Strategy to Improve the Fight Against Fiscal Fraud*, 2006.

_____, COM (2008) 109,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On Measures to Change the Vat System to Fight Fraud*, 2008.

_____, COM (2008) 807,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On a Coordinated Strategy to Improve the Fight against VAT Fraud in the European*, 2008.

_____, COM(2009) 511, *Council Directive: Amending Directive 2006/112/EC as regards*

an optional and temporary application of the reverse charge mechanism in relation to supplies of certain goods and services susceptible to fraud, 2011

_____, COM(2012) 722,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An Action Plan to strengthen the fight against tax fraud and tax evasion*, 2012

HMRC, *Measuring Tax Gaps 2012*, 2012. 10.

OECD, *Tax Administration in OECD and Selected Non-OECD Countries: Comparative Information Series*, 2011

Reckon LLP, *Study to quantify and analyse the VAT gap in the EU-25 Member States*, 2009. 09

<http://kosis.kr/>

<http://www.hmrc.gov.uk/>

<http://www.ibfd.org>

<http://www.nts.go.kr/>

작성자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02-2186-2229)